

[사 건 명] 행심 2018 - 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1. 인정사실

- ① 청구인(2017. 11. 13.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전학함)은 허○○이 만든 피해학생의 합성사진{피해학생의 얼굴을 동물(돼지)의 몸과 합성함}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이□□로부터 전송받은 다음, 2017. 12. 2.과 같은 달 5.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 ② 그 후 단체대화방에서 합성사진을 본 학생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큰소리로 ‘청구인이 단톡방에 피해학생의 합성사진을 올렸다’ 고 말하였고, 마침 교실에 있던 피해학생이 이를 알게 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 ③ ○○초등학교로부터 이 사건을 통보받은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12.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4일(1시간씩), 서면사과,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조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 ① 청구인은 단체대화방에 합성사진을 게시한 것은 피해학생을 의도적으로 모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순 장난에 불과하다.
- ② ○○초등학교 담당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합성사진을 입수하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피해학생의 의견만을 반영하거나 청구인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하였다.
- ③ 선도가능성이 높아 조치를 감경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전학을 하여 피해학생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 ① 청구인의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피해학생은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교우관계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 ② 담당교사는 피해학생의 합성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단체대화방에 가입된 박□□로부터 합성사진을 받은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고, 합성사진은 오로지 이 사건을 판단하는 자료로만 이용되었다.
- ③ 청구인이 전학을 가서 다른 학교에 재학중이므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사진은 동물의 몸에 피해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피해학생을 비만한 사람으로 비하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합성사진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한편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담당교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합성사진’을 입수한 것은 긴급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의 남용 여부

청구인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피해학생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것은 신체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신체의 약점을 비하할 경우 정신적 충격을 쉽게 받을 수 연령인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상의 피해를 주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장난’이라거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청구인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이후의 청구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

여진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제9항에 의하면, 가해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를 명할 경우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때 특별교육은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